

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 - 0304호
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(벽지)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9월 21일
국가기술표준원장

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(벽지) 안전기준 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취지

폼블럭벽지를 적용범위에 포함하고, 중금속 등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신설하여 안전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

2. 개정내용

- 폼블럭벽지를 적용범위에 포함
- 중금속(납, 카드뮴) 및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안전기준 신설

- 붙임 1. 안전기준 부속서 23 일부개정(안)
2. 안전기준 부속서 23 신구조문 대비표

3. 의견제출

[붙임]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,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출기한 : 2020. 11. 20(금)

나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사유)

다.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(주소 및 전화번호)

라. 단체인 경우(단체명, 대표자명, 주소 및 전화번호)

※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

○ 주소 :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(우 27737)

○ 전화/팩스 : 043-870-5455/043-870-5677

○ 이메일 : consumer1@korea.kr